

대구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247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32690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124751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지민

변론종결 2021. 9. 29.

판결선고 2021. 10. 2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12.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2019. 12. 19. 접수 제501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C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31.부터 2005.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9.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57216호).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 소유인 경산시 D 대 2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6. 4. 5. 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06. 9. 1.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E).

(3) 한편, C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1135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포함하였고 2015. 7. 22.경 위 채권자목록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위 개인회생절차는 2015. 12. 31. 폐지되었다.

(4) 원고는 2016. 4. 5.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4. 22. 'C은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3. 31.부터 2005.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5. 1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6차1874호).

나.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이 사건 부동산 중 6,902분의 792.7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C은 2019. 12. 19. 전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6,902분의 6,109.3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9. 12. 19. 접수 제5019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C은 2019. 12. 19.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통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2005. 9. 8. 확정되어 그 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진행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6. 9. 1. 기각되었는바 민법 제178조 제1항(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에 따라 2006. 9. 1.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며 C은 2015. 7. 22. 이전에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11351회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2015. 7. 22.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6. 1. 1.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6,902분의 6,109.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 경위,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피고가 남동생인 G에게 명의를 신탁하되 매수대금을 피고가 마련하여 G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으로 2005. 7. 20.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놓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 부동산으로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지민

별지 목록 부동산

경산시 D 대 221.5㎡

(위 토지 지분 중 가등기권자 B의 지분 6902분의 6109.3에 대해서)

